

2026년 대구광역시 노후차(5등급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대기오염물질의 근원적 발생을 감소하여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 대구광역시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및 건설기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23.

대 구 광 역 시 장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는 2026년까지만 보조금 지원)

1. 사업개요

가. (사업대상)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및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제작사에 등급확인 필요 (Euro4, Euro3 이하)

** 지게차 또는 굴착기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20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 등급 확인방법 : ☎1833-7435 또는 www.mecar.or.kr

※ 배출가스 등급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 기준을 따름

나. (사업예산) 3,500백만원

※ 차종, 등급 등에 따라 차량 기준가액 및 지원금이 상이하므로 지원대수는 유동적임

다. (접수기간) 2026. 3. 4.(수) ~ 5. 29.(금) 상시접수

※ 신청 순서대로 1인 1대에 한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라. (대상선정) 공동명의를 포함하여 1인 1대에 한해 신청 순서대로 대상선정

마. (신청방법) ① 온라인 ② 등기우편(2026. 5. 29. 소인분까지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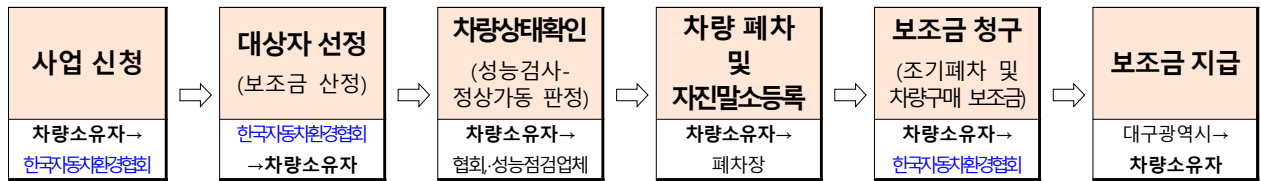
※ 직접 방문, 이메일 신청 불가하며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온라인과 등기우편 신청은 방법의 차이만 존재하며 그 외 어떠한 차이도 없음

① 온 라 인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② 등기우편 :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바. 사업절차



2. 지원기준

◇ 다음 5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 가능

- ① **(소유기간)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의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인**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접수일(협회 도착일) 기준으로 6개월 충족 여부 확인
 - ※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이전) 당초 소유자(사망자)의 소유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을 통해 인정 가능
- ② **(등록기간) 대기관리권역 또는 대구광역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된**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 기준(사용본거지)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류 도착일 또는 온라인 신청일) 당시 기준으로 확인
- ③ **(관능검사)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직전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
- ④ **(성능검사)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성능점검업체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⑤ **(기타)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DPF 부착 차량도 지원 가능

3. 사업대상자 선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차량 소유자 통지]

- **(선정방식)** 공동명의를 포함하여 **1인 1대**에 한해 신청 순서대로 대상선정
 - ▷ 신청 기간 내 여러 대를 신청하여도 1대만 대상선정
 - ※ 신청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대상선정 통지가 있어야 지원대상임
- **(선정통지)**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순차적으로 안내 예정
 - ※ 조기폐차 신청 당시 기재한 연락처로만 안내되므로 연락처를 잘못 기재하였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연락하여 수정 요청

4. 지원금액 및 조건 등

가.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지원율 및 지급기준

(단위 : 만원)

| 구 분 | 상한액 (1차+2차) | 지원율 | | | |
|--------------------------------------|----------------------------|-----------------------|----------|---------------------|-----------------------|
| | | 1차(폐차) | 2차(차량구매) | | |
| 5등급 자동차 | ①총중량 3.5톤 미만 | 300 | 100% | - (차량구매 지원하지 않음) | |
| | ②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 |
|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 |
| | | 7,500cc 초과 | 3,000 | | |
|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4등급 포함) | (5등급) 4,000 (4등급)10,000 | | | | |
| 굴착기 | 16톤 미만 | 1,650 | 100% | 200%(신차) | |
| | 16톤 이상 33톤 미만 | 2,700 | | | |
| | 33톤 이상 | 7,900 | | | |
| 지게차 | 9톤 미만 | 1,050 | 100% | 200%(신차) | |
| | 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 | | | |
| | 18톤 이상 | 12,000 | | | |

-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연식 등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금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금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임
-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 폐차 차량과 신규 구매 차량(신차, 중고차)의 총중량 구분 범위가 다른 차량을 구매한 경우 2차 보조금 불가

예시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예시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예시3)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조건 만족시)
 예시4)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폐차→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조건 만족시)
 예시5) 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폐차→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예시6)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예시7) 지게차 폐기→굴착기 구매, 굴착기 폐기→지게차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조기폐차 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사용본거지(차량등록지) 이전 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한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
- 사업대상자 선정(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전까지 말소 또는 소유자 변경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조기폐차 후 수출된 건설기계가 국내에 재등록된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폐기 말소 후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및 동법 제40조제1호(벌칙)에 따라 처벌 및 조기폐차 보조금 회수조치될 수 있음
- 차령 초과수출멸실 등의 말소, 관용 차량은 보조금 지급 불가

- * 차량기준가액 : 보험개발원(www.kidi.or.kr)이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당해 1분기 기준 산정금액
-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하되, 소유자가 차량 제작사(영업소 포함)로부터 해당 차량의 사양(트림, 구동방식)이 표기된 증빙 서류를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시까지 증빙하는 경우 인정 가능
- *보험개발원에서 작성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 세분항목에 표기하고 있는 사항(예: 모던·프리미엄·프리스티지·프리미어·럭셔리·익스클루시브·LT·LTZ 등)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 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06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06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 등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지게차,굴착기)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천원(천원 미만 절사)

나. 1차 보조금 지원(폐차에 따른 보조금) - 상한액 범위 내

- 5등급 자동차 및 건설기계 :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 저소득층, 소상공인은 증빙서류 등 제출 시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 지급(상한액 내)
 - ※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 5등급 경유자동차(총중량 3.5톤 미만) 중 저감장치 부착불가 자동차로 시스템 및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조기폐차 기본보조금에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을 상한액 내에서** 추가 지원
 - ※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 소홀의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
- 대구광역시는 검토 후 청구서 접수일(협회가 청구 서류에 이상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보조금을 지급
 - ※ 사업 진행 초기(3~5월)에는 청구자가 집중되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음

다. 2차 보조금 지원(조건에 맞는 차량구매 시 보조금) - 상한액 범위 내

◇ 5등급 자동차(3.5톤 미만)의 경우 '26년부터 2차(차량구매)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음

| 구분 | 지원율 |
|--|---|
| <p>총중량 3.5톤 이상 5등급 자동차 폐차 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가스 1·2등급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건설기계) ▶ 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규격*)이 같거나 작은(20% 범위 내 일부 증가한 경우도 인정) Euro-6 이상 자동차** (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대기규칙 별표17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 등록 자동차의 제원 표기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 인정(20% 범위 내 일부 증가 인정)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
| <p>건설기계 폐기 시 (굴착기, 지게차)</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화 등 무공해 굴착기·지게차 또는 대기규칙 별표17제4호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굴착기·지게차*(가스연료 포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 경우에 한함(20% 범위 내 규격·정격출력 일부 증가 인정) |

※ 조기폐차 신청 전에 신차 또는 중고차를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규등록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2차 보조금 신청 가능


※ 2차 보조금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신규 등록일(중고차의 경우 명의 이전일)로부터 2년 동안 2차 보조금 지급 불가(동일 차량에 1회만 지원)

5. 지원절차 상세

가. 신청방법 : ① 온라인 ② 등기우편(2026. 5. 29. 소인분까지 인정)

※ 직접 방문, 이메일 신청은 불가하며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접수처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 |
|--|--|
|  <p>온라인 (인터넷) [붙임참고1]</p> | <p>○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www.mecar.or.kr</p> <p>①사이트 접속 → ②회원가입(소유자 문자인증) → ③민원서비스(저공해조치 신청) 신청 → ④차량 조회 및 휴대전화 입력 → ⑤저공해신청</p> <p>※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모든 명의자의 신분증(공동명의)은 인터넷 신청시 PDF 파일로 함께 제출</p> <p>※ 차량 사양 증빙서류 등 인터넷 신청시 제출하지 못한 증빙서류는 협회에 제출방법 문의(1577-7121)</p> |
| <p>등기우편</p> | <p>○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 발송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관양동, 한국자동차환경협회)</p> <p>※ 접수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단, 예산소진 후 발송된 소인분은 미인정)</p> <p>○ 구비서류</p> <p>①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 서식1]</p> <p>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p> <p>③ (개인) 차량 소유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공동명의는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 必 (미제출 시 접수 불가)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p> <p>④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공동명의는 모든 명의자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 必 (해당자)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에서 발급) (해당자) 배출허용기준 증빙 서류(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p> <p>※ 위·수탁 차량은 위·수탁계약서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같이 첨부하여 제출</p> |

나.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발급기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문자(또는 카톡) 통보

- 신청 당시 차량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가 일치하여야 문자가 발송됨

※ 위 절차로 보조금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이 조기 소진될 수 있음

※ 대상선정 전 사용본거지 변경 또는 폐차(말소)를 진행한 경우 보조금 지급 청구 불가

다. 차량상태확인(성능검사)

○ (차량소유자) 온라인 또는 직접방문으로 차량상태확인 실시

※ 보조금 지급 대상확인서 발급일 이후 대상차량 상태확인을 받고 2개월 이내에 폐차(말소)해야 함 (확인받지 않고 폐차 시 보조금 지급 불가)

(온라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시스템(www.escar.or.kr)



직접 차량상태 동영상 업로드 ▶ 성능검사 비용 14,000원(부가세 포함) 본인부담

· [붙임 참고2] 온라인 성능검사 매뉴얼 참조

· 정상가동 판정을 위한 성능검사 비용 14,000원은 폐차 후 보조금 지급 시 환급됨
(직접방문) 성능점검업체에 차량을 가지고 방문하여 차량상태확인(성능검사)

▶ 성능검사 비용(업체별로 상이) 본인부담

· [붙임 참고4] 대구광역시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업체 현황 참조

· 전국 성능점검 가능한 업체 가능,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현장검사도 가능

< 주의사항 >

· 성능검사 비용은 온라인 검사비(14,000원) 기준 지원

다만,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보조금 청구서[서식 2] 제출 시 납부한 성능검사 비용의 증빙서류(영수증 등)을 받아 지원, **검사 수수료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원 불가**

·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60일 이내 찍은 동영상만 인정

라. 폐차 및 자진말소 등록

○ 차량상태확인(성능검사)을 실시하고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후, 폐차장에 폐차 및 자진말소 등록 요청 ([붙임 참고5] 관내 폐차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 현황 참조)

※ “자진말소”가 아닌 그 외 말소(차령초과말소, 수출말소 등) 등록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저당이나 압류등록이 있는 경우 자진말소가 불가할 수 있음

○ 폐차장(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수령하여 향후 보조금 청구시 첨부서류로 제출

마.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자는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구·군 환경과 문의) ▶ 납부 증빙서류 제출 필수

바. 보조금 청구

○ 온라인(www.mecar.or.kr) 또는 등기우편으로 청구서 제출

-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차 보조금 청구 시 필요 서류(폐차시) | 2차 보조금 청구 시 필요 서류(차량구매시) |
|--|---|
|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붙임 서식2] 2) 자동차(건설기계) 말소등록사실증명서 3)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 통장 사본 ※ 입출금이 가능한 본인 명의의 계좌여야 하며 압류계좌, 수급자 통장 등 제출 시 지급 불가 4) 차량상태(성능검사)확인서 및 검사 수수료 증빙서류 단, 온라인 또는 협회에서 진행한 검사는 생략 가능 5)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 6) (신청당시 미제출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증명서 7) (공동명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원본 8) (해당자) 위·수탁 계약서 사본 | 1)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급청구서 [붙임 서식3] 2) 신규 자동차(건설기계)등록증 사본 3)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 통장 사본 ※ 입출금이 가능한 본인 명의의 계좌여야 하며 압류계좌, 수급자 통장 등 제출 시 지급 불가 |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3.5톤 미만)는 2차보조금 청구 불가(차량구매시 2차 지원 없음)

※ '25. 11. 1. 이후 등록한(구매계약서 인정 불가) 자동차에 대해 2차 보조금 지급 가능

※ 청구서 접수일 기준 폐차차량 소유자와 신차(또는 중고차) 소유자 일치하여야 함
 → 다만, 공동명의(변경 포함)와 관련하여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관계에 한정하여 조건 만족 시 지원대상으로 인정(붙임 참고)

※ 추가증빙서류*는 보조금 청구서 제출 시까지 증빙할 경우 지원금액 재산정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소상공인 확인서, 차량 사양 증빙서류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5등급 자동차, 4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조기폐차 후 2차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동차의 의무운행기간(2년) 및 회수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및 「특정경유자동차 등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름(단, 차량의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 차량 고장 등이 발생되어 더 이상 차량운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 받아 보조금 회수 예외 적용 가능)

○ 보조금 청구기간

- 1차 보조금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서 제출 이후에는 보조금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따라 위·수탁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 가능(위·수탁 계약서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제출 필요)

※ 청구 기간 경과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2차 보조금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신차 출고 지연으로 보조금 청구기한 연장할 경우 차량구매계약서 사본, 차량 출고 지연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 시 청구 기간 연장 가능 단, 중고차 구매에 따른 청구기한 연장은 불가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적용 기준〉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 단, 조기폐차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
- 차량 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으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 지입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상공인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적정한 확인서만 인정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 소유는 불인정)



sminfo.mss.go.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에 한함)

사용본거지 기준 관할 구군청 환경부서에 문의하여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분)을 납부하고 보조금 청구 시 증명서류 첨부

- ※ 납부의무자가 3천원 미만 등의 사유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3천원 미만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구·군의 납부증명 서류 필요

| | |
|------------------------------------|------------------------------------|
| (중구청) 환경과 ☎ 053-661-2738 | (동구청) 환경과 ☎ 053-662-2585 |
| (서구청) 생활환경과 ☎ 053-663-2587 | (남구청) 녹색환경과 ☎ 053-664-2583 |
| (북구청) 환경관리과 ☎ 053-665-2572 | (수성구청) 녹색환경과 ☎ 053-666-2644 |
| (달서구청) 기후환경과 ☎ 053-667-2571 | (달성군청) 환경과 ☎ 053-668-2584 |
| (군위군청) 환경과 ☎ 054-380-7945 | |

6.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2026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조기폐차 사업절차를 폐차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 또는 개인 등에게 대행을 맡기는 경우에도 모든 사업절차에 대한 책임은 차량 소유자에게 있음
 - 대행 맡긴 사항(사업신청·각종 서류제출·보조금 청구 등)에 대해 진행과정을 반드시 확인
- 사업에 관한 안내 및 서류보완 등은 신청서 상의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
-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후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해야 하며, 미준수 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함(3.5톤 미만 4등급 제외)
- 2차 보조금 청구 시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27년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조기폐차 사업관련 내용 문의처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 신청서류 관련,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보조금 금액, 폐차 후 보조금 청구방법 등

<보조금 청구관련 유의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차량상태확인(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말소일 이전에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소유자 변경이 아닌 단순 이름변경(개명)할 경우 증빙서류 추가 제출 필요 (기본증명서(상세) 등)
- 폐차한 차량이 공동명의 경우, 위임받은 자에게 보조금 지급 가능
- 차량소유자가 미성년자, 장애 등의 사유로 법정대리인이 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붙임 [서식5],[서식6])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 등록 차량의 명의자가 다를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1차(폐차) 보조금과 2차(차량구매) 보조금을 같이 청구하였어도, 1차(폐차) 보조금 지급 후 2차(차량구매) 보조금을 지급함
- 2차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동차의 경우 신규 등록일(중고차의 경우 명의 이전일)로부터 2년 동안 추가지급 불가(동일 차량에 1회만 지원)하며, 2차 보조금 신청 차량의 명의이전일 기준 6개월 이내 해당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7. '26년도 주요개정내용('25년 사업대비)

| 구 분 | 2025년 | 2026년 |
|--|--|--|
| 조기폐차 신청 조건 | ▶ 3.5톤 이상 차량 소유기간 6개월 | ▶ 모든 차량 소유기간 6개월 |
|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2차(차량구매) 보조금 폐지 | ▶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차 2차 보조금(신차 구매) → 차량가액의 50% | ▶ 2차 보조금(신차 구매) 폐지 |
|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자동차 2차(차량구매)지원 대상 및 지원을 변경 | ▶ 1·2등급(전기, 수소,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 2차보조금 지원을 (승용 50%, 그외 30%) | ▶ 전기·수소·하이브리드(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 보조금 지원을 (1차보조금 70%, 2차보조금 30%) |
| 무공해차 구입보조금 항목 삭제 | ▶ 무공해차(전기,수소)구입 시 50만원 추가지원 | ▶ 폐지 |
| 차량사양 증빙서류 발급처→보험회사 제외 | ▶ 차량 제작사(영업소 포함) 또는 가입된 보험회사 | ▶ 차량 제작사(영업소 포함) |
| 2차 보조금 과거 소유 이력에 따른 지급제한 | ▶ 과거 소유이력에 대한 기준 신설 | ▶ 2차 보조금 신청차량의 명의 이전일 기준 6개월 이내 해당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
| 2차 보조금 지급 기준 |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차 구매 자동차 소유자 일치 | ▶ 폐차 차량 소유자가 공동명의 일 경우 신차 구매 차량 또한 공동명의로 일치 ※ 다만, 공동명의(변경 포함)와 관련하여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관계에 한정하여 조건 만족 시 지원대상으로 인정 |

<참고> 2차 보조금 지급 기준 변경에 따른 주요 사례 정리

<공동명의>

○ A 명의 조기폐차 → A-B(공동) 명의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 A-B(공동) 명의 조기폐차 → A 또는 B 명의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 또는 B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로 등록시 B의 위임장, B로 등록시 A의 위임장 필요)]

○ A-B(공동) 명의 조기폐차 → A-C(공동) 명의로 신규 등록

⇒ 지원 불가[단,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A, B, C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주소 등 확인 필요) A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B의 위임장 필요]

<사망·상속>

○ A 명의 조기폐차 신청 후 사망으로 상속인 B가 1차 보조금 수령 → B 명의로 신규 등록

⇒ 상속인이 1차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해 포괄적 승계에 따라 상속인 B에게 2차 보조금 지급 가능(단,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 포기 각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필요)

<과거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 A 명의 조기폐차 → A 명의로 신규 등록(과거 A 명의로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 최종 소유권 이전 일자를 확인하여 폐차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와 일치하는 경우 2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나, 최종 소유권 이전 일자 기준 6개월 이내 해당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A-B 공동명의 조기폐차 → A 또는 B를 포함하여 '25.10.31.까지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A-B 명의로 '25.11.1. 이후 신규 등록

⇒ 조기폐차 차량 공동명의 소유자 중 1명이라도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명의 이전하여 신규 등록으로 신청하는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위·수탁 자동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 및 제40조에 따른 위·수탁 계약

| A(법인)명의 조기폐차 1차 보조금을 B(개인, 실질적 소유자)가 수령 | |
|--|--|
| → (위·수탁 유지)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필요) |
| → (위·수탁 해지/만료) | B(개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위·수탁 해지 계약서 등 확인 필요) |
| → (위·수탁 A 해지/ C 체결) | C(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 C의 위임장, 위·수탁 계약서(해지포함) 사본 등 확인 필요) * 실질적인 소유자는 B로 동일하고 위·수탁 계약 해지 및 체결로 인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

| A(법인)가 조기폐차 1차 보조금 수령(실질적 소유자 : B) | |
|---|--|
| → (위·수탁 유지)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A(법인)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B의 위임장 필요)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필요) |
| → (위·수탁 해지/만료)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B(개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의 위임장 필요) |
| → (위·수탁 A해지/ C체결) | A(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C(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B(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A, C의 위임장 필요) |

| A(개인) 명의로 조기폐차 1차 보조금 수령 | |
|---------------------------------|--|
| → (위·수탁 체결) | B(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시 A(개인)에게만 2차 보조금 지원 가능(단, B의 위임장, 위·수탁 계약서 사본 등 확인 필요) * 위·수탁 계약 체결로 인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

[서식1]

|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서 | | 처리기간 |
|--|--|---|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 | 10일 |
| 소유자 | ①성명(법인명) (공동명의로 모두 기재) | ②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공동명의로는 명의자 모두의 생년월일 기재) |
| | ※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발급 시 필요) <input type="checkbox"/> 성명 : _____ <input type="checkbox"/> 휴대전화 : _____ <input type="checkbox"/> 생년월일 : _____ - ____ *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까지 기재) <input type="checkbox"/> 성별: 남 / 여 | |
| | ③주소(사용본거지) | |
| | ④휴대전화(차주 본인) (공동명의로 모두 기재) | ⑤FAX 또는 이메일 |
| 대상 자동차 | ⑥차량번호 | ⑦차대번호 |
| | ⑧사용본거지 | ⑨차명/사용연료 |
| | ⑩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하는 곳에 체크 <input type="checkbox"/> 5등급 자동차 <input type="checkbox"/> 4등급 자동차 <input type="checkbox"/>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도로용3종* 건설기계 <input type="checkbox"/> '06년~'09년 8월 배출허용기준 적용 도로용3종* 건설기계 <input type="checkbox"/> 지게차 <input type="checkbox"/> 굴착기 * 도로용3종: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
| 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사업신청 후 사업대상자 선정(지급대상확인서 발급)까지 사용본거지를 변경하거나 자진말소 등록일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처벌받을 수 있음 ※ 공동명의로자 소상공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로자 모두의 ①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아래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_____년 _____월 _____일 신청자 : _____ (서명 또는 인) (개인은 서명 가능, 법인은 날인) | | |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귀하 | | |
| 첨부하여야 할 서류 | |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
| 필수 |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 ※ 공동명의로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 2.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 ○ 자동차 또는 건설 기계 등록원부 ○ 자동차 또는 건설 기계 검사결과 |
| 해당자 | 1.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공동명의로인 경우 모든 명의자 증명서 제출 2.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3.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에서 발급) 1부. 4. 배출허용기준 증빙 서류 1부.(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필수 제출) 1부. 5. 위·수탁 계약서 사본 1부. | 없음 |
| <input type="checkbox"/> 등기우편 보내실 주소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관양동,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 |

[서식3]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급청구서

| | | | | | |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
| | 주 소 | | | | |
| | 휴대전화(차주 본인) *법인은 대표자 | | FAX 또는 이메일 | | |
| 구매 차량 (건설기계) 정보 | 구매 차량등록번호 | | | 차대번호 | |
| | 2차 보조금 신청금액 | <input type="checkbox"/> 신차 | <input type="checkbox"/> 중고차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상 산정금액 (기입 불필요) | |
| 조기폐차 차량정보 | 폐차 차량등록번호 (필수) | | | | |

위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에 대해 확인(추후 번복 불가)하고
청구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2차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 청구는 폐차 말소등록 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와 함께 청구하거나 그 이후에 청구 가능
- ※ 조기폐차한 차량의 소유자가 공동명의인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시 제출한 위임장에 따른 위임받는
자가 추가보조금 수령 가능
- ※ 첨부서류(필수 및 해당자) 미비 시 보조금 지급은 불가함
- ※ 첨부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년 월 일

청구자 : (서명 또는 인)

(개인은 서명 가능, 법인은 날인)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귀하

[첨부 서류]

1. 구매한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 - 필수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 필수
※ 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에 첨부된 통장으로 갈음될 수 있음
3.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사본 각 1부 (총중량 3.5톤 미만 해당자에 한함)
※ 신차(중고차 포함) 구매시 공동명의의 관련 입증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등

등기우편 보내실 주소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관양동,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서식4]

위 임 장

| | | | | |
|-----------------------|----------|--|---------|--|
| 위임을 받는 자 (보조금 수령자) | 성 명 | | | |
| | 생년월일 | | | |
| | 주 소 | | | |
|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 위 임 자 | 성 명 | | | |
| | 생년월일 | | | |
| | 주 소 | | | |
| 조기폐차 차량정보 | 폐차한 차량번호 | | 폐차한 차량명 | |
| | | | | |

상기 “위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2차 지급청구 포함) 및 보조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와 권리를 “위임을 받는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을 받는 자 : (날인 또는 서명)

위 임 자 : (인감날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서명 가능

붙임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등기우편 보내실 주소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관양동,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서식5]

법정대리인(미성년자) 동의서

| | | | | |
|-----------------------------------|----------|---------|-------------|--|
| 청 구 인 (미성년자) | 성 명 | | | |
| | 생년월일 | | | |
| | 주 소 | | | |
| 법정대리인 | 성 명 | | | |
| | 생년월일 | | 청구인과의 관계 | |
| | 주 소 | | | |
| 법정대리인 (공동친권자인 경우 기재) | 성 명 | | | |
| | 생년월일 | | 청구인과의 관계 | |
| | 주 소 | | | |
| 조기폐차 차량정보 | 폐차한 차량번호 | 폐차한 차량명 | | |
| | | | | |

본인(들)은 위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2차 지급청구 포함) 및 보조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법정대리인 : (인감날인)

(공동친권자인 경우 작성)법정대리인 : (인감날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서명 가능

붙임 : 1.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등기우편 보내실 주소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관양동,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서식6]

법정대리인(장애, 노령 등) 동의서

| | | | | |
|--|----------|---------|-------------|--|
| 청 구 인 (장애, 노령, 질병 등으로 성년후견개시한 자) | 성 명 | | | |
| | 생년월일 | | | |
| | 주 소 | | | |
| 법정대리인 | 성 명 | | | |
| | 생년월일 | | 청구인과의 관계 | |
| | 주 소 | | | |
| 조기폐차 차량정보 | 폐차한 차량번호 | 폐차한 차량명 | | |
| | | | | |

본인(들)은 위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2차 지급청구 포함) 및 보조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법정대리인 : (인감날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서명 가능

- 붙임 : 1.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성년후견개시 심판 결정서 1부.

등기우편 보내실 주소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관양동,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참고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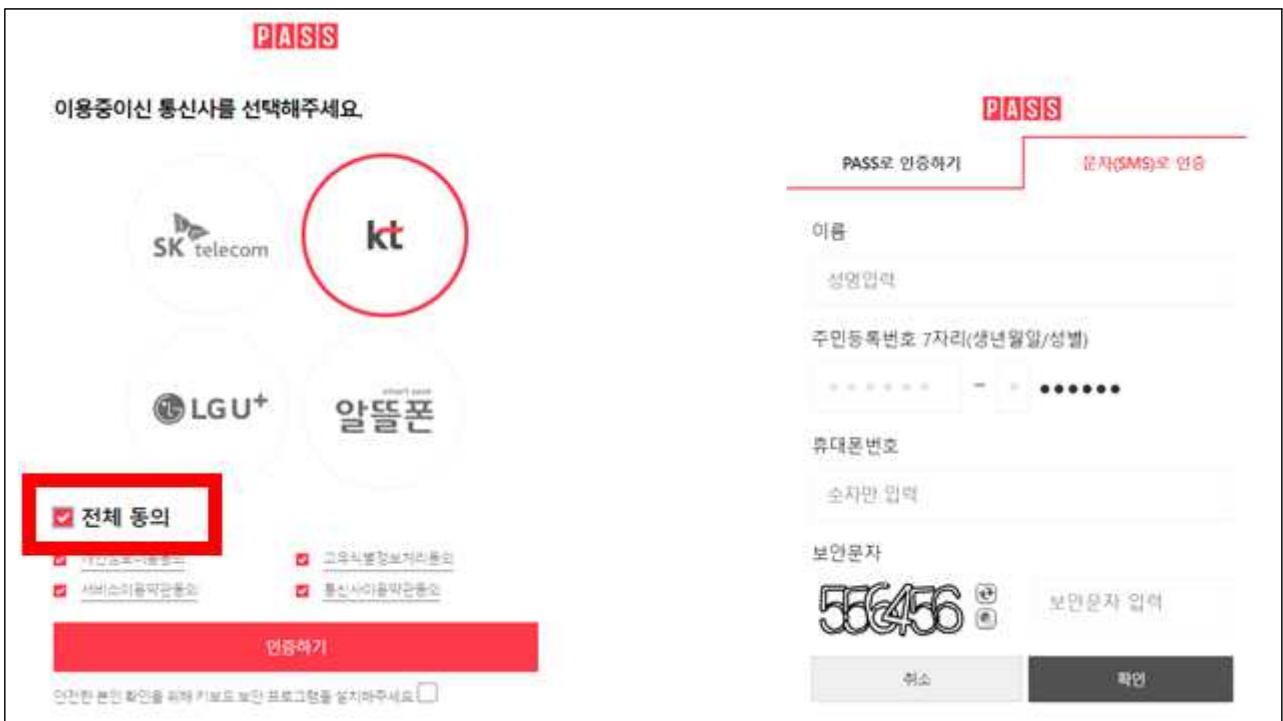
온라인 접수방법

순서1) 회원가입(배출가스 등급제)

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www.mecar.or.kr) 홈페이지 접속

② 회원가입 클릭(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일반회원 가입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 만 14세 이상가입
⇒ 본인인증 클릭 ⇒ 인증수단 휴대폰 선택시 ⇒ 통신사 선택 및 약관 이용
정보 동의 및 시작하기 클릭 ⇒ 문자인증 클릭 ⇒ 개인정보 입력 ⇒ 확인 클릭
⇒ 인증번호 6자리 입력 ⇒ 회원 아이디 등 개인정보입력 ⇒ 가입신청 클릭



순서2) 조기폐차 저공해신청

< 접수기간 이전에 시스템에 기 등록된 차량은 기간내 재등록 하여야 함 >

- ◆ 저공해조치 신청(DPF/조기폐차/건설기계) 클릭⇒ 저공해조치 신청 구분 클릭
⇒ 약관 동의 ⇒ 저공해조치신청 정보 입력(차량번호 기재 후 차량조회 클릭)
저공해조치방법(*) 조기폐차 클릭⇒ 저공해신청 클릭

저공해조치 신청

민원서비스 > 저공해조치 신청

○ 저공해조치신청 정보입력

- ※신청자가 및 미개발청사 건인 경우 저감장치 부착 신청이 불가하며, 초기배차 신청만 가능합니다.
- ※실제 지원 및 조치 가능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지역번호 + 120)
- ※저공해조치 신청 전, 지자체 공고문 내용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증빙서류는 지자체 공고문에 따라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표시항목은 입력 필수 사항입니다.

신청자명

*휴대전화(대표자) 010

*자동차 등록번호 **차량조회**

※ 차량조회버튼 클릭후 차량검색 차대번호링크를 선택하시면 신청정보가 자동입력됩니다.

차대번호

*저공해조치 방법 저감장치 부착 초기배차

취약계층 ● / 소상공인 ●

취약계층 여부 선택된 파일 없음

소상공인 여부 선택된 파일 없음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체크한 경우 초기배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파일로 제출 하여야합니다. 미제출 시 취약계층, 소상공인 적용 불가 (문의처: 1577-7121)

※ 첨부서류는 하나의 압축파일(*.zip) 또는 PDF(*.pdf), 이미지(*.jpg, *.jpeg, *.png) 파일로 업로드 가능합니다.

차명

연식

소유자명

주소

신청지자체

전화번호 [선택]

팩스번호 [선택]

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였으며, 위와같이 차량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확인사항) 본인은 신청차량의 정보(배출가스 등급 및 저감장치 부착 여부 등)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차량 정보에 이상이 있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관련규정 : 환경부 고시 제2020-50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초기배차 접수 후 절차는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개인 | 법인 |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차량번호 조회 닫기</p> <hr/> <p>1. 차량 등록번호로 검색하세요. 예) 경기 12가 1234</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구분선택</p>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 <input type="radio"/> 승용차 <input checked="" type="radio"/> 건설기계 </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 <input type="text" value="개인"/> </div> <p>차량번호입력</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green; padding: 2px;">검색</div> </div> </div> <hr/> <p>2. 검색결과에서 찾으시는 차대번호 링크를 선택하시면 자동 입력 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본인소유의 차량만 조회 가능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대표명의자가 신청 가능합니다.)</p>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차량번호 조회 닫기</p> <hr/> <p>1. 차량 등록번호로 검색하세요. 예) 경기 12가 1234</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구분선택</p>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 <input type="radio"/> 승용차 <input checked="" type="radio"/> 건설기계 </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법인</div> <p>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green; padding: 2px;">검색</div> </div> </div> <hr/> <p style="font-size: x-small;">* 신청차량 자동차등록종류 *승주인(법인)등록번호*에 기재된 번호이며, 숫자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p> <hr/> <p>2. 검색결과에서 찾으시는 차대번호 링크를 선택하시면 자동 입력 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본인소유의 차량만 조회 가능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대표명의자가 신청 가능합니다.)</p> </div> |

● 법인신청 방법

- 회원가입 : 회사직원이 일반회원으로 가입
- 차량신청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수집 동의 클릭 ⇒ 차량조회 ⇒ **차량번호 조회 팝업창에서 법인으로 변경** 후 순서대로 진행
-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필수 입력

● 파일 첨부 가능

①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 조기폐차 신청일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공동명의 경우 모두 해당되어야 인정)

②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하되,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
- ※ 공동명의이면서 소상공인일 경우 각각 신분증+ 소상공인확인서 첨부해야 인정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③ 배출허용기준 증빙 서류(도로용3종 건설기계 해당)

- 2006년식 이후 건설기계는 유로3 or 유로4 확인서류를 제작사에서 발급 가능

순서3)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청구·추가·기간연장)

- ◆ **저공해조치 신청(DPF/조기폐차/건설기계)** 클릭 ⇒ **보조금 신청(청구추가기간연장)** 클릭
 ⇒ 차량조회 클릭 ⇒ **보조금·추가보조금·기간연장** 선택 클릭 ⇒ 신청정보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보조금 전자서명에 대한 동의(동의 하고 서명완료)**

* 민원서비스 > 저공해조치 신청

등급조회

운영제한 정보 서비스

저공해조치 신청

LPG차 전환지원 신청

내차 종합 정보

이륜차 소음정보

저공해조치 신청

민원서비스 > 저공해조치 신청

○ 저공해조치 신청/보조금 신청

원하시는 **저공해조치/보조금 신청**을 선택해 주십시오.

✓

저공해조치 신청
(DPF/조기폐차/건설기계)

✓

보조금 신청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보조금, 청구기간연장)

선택하기

저공해조치 신청

민원서비스 > 저공해조치 신청 > 저공해조치 신청 목록

○ 저공해조치신청내역

추가신청

뒤로

| 접수번호 | 차량번호 | 차대번호 | 신청 지자체 | 신청일자 | 진행상태 | 보조금 | 추가 보조금 | 기간 연장 |
|---------|---------------|--------|-------------|----------|---------------------|-----------|-----------|-----------|
| 5412078 | 99921Q 003 | RHTEST | 서울특별시 신청 | 20250217 | 결도완료 (예산대응 인) | 신청 | 신청 | 신청 |

- * 차대번호를 클릭하여 상세신청내역을 확인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 * 추가신청을 클릭하면 새로운 차량을 추가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추가보조금 청구, 보조금 기간연장 신청은 상세화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저공해조치 신청(조기폐차)은 하였으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확인 **바로가기**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인원서비스 >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 신청정보 등록

⋮ 신청 정보 조회(미카 전산)

| | |
|----------------------|---|
| 차량번호 | 977가3355 |
| *표시항목은 입력 필수 사항입니다. | |
| 차량 소유주 이름* (발소등상) | 홍길동 |
| 명의확인* | <input type="radio"/> 개인(단독)명의 <input type="radio"/> 공동 명의 <input type="radio"/> 법인 차량 <input type="radio"/> 위수탁 차량 <input type="radio"/> 비영리단체(교회 등) <input type="radio"/> 사망 |
| 연락처 | 010-0000-0001 |
|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여부* | <input type="radio"/> 해당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는 모두 해당으로 체크) <input checked="" type="radio"/> 미해당 |
| 조기폐차 지원금 총계 | 폐차 지원가액 2,830,000원 + 저감장치 이개발 추가 보조금 0원 + 소상공인 추가보조금 0원 = 총 2,830,000원 |

⋮ 보조금 입금 계좌 등록

| | |
|---------------|---|
| 본인 계좌번호 (필수)* | <input type="checkbox"/> 반드시 입출금이 자유로운 본인 명의의 통장 계좌만 가능(영축저축어, 압류방지통장 등 불가) 하며, 해당 계좌로 보조금이 입금되는 것을 동의합니다. |
| | <input type="text" value="선택"/> <input type="text" value="계좌번호를 입력하세요."/> <input type="button" value="계좌인증"/> |
| 발소일자* |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 |

개인 명의 선택 구비서류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민원서비스 >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 구비서류 등록 (개인)

| | | | |
|--|------|-----------|-------|
| 말소증(필수) | 파일첨부 | 말소증.png | 파일 추가 |
| 환경개선부담금 총괄현황표 (필수) | 파일첨부 | 선택된 파일 없음 | 파일 추가 |
| - 발급방법 - 대상주최: https://www.wetax.go.kr/main.do 납부 → 납부대상확인 → 환경개선부담금 - 납부방법: 인터넷(은행, 지로, 뱅크스 등), 금융기관(현금입출금기, 창구 등) - 폐차장에 차량입고 차량입고사실증명서 발급 - 폐차장에 차량입고 차량입고사실증명서 발급 - 현재까지 무과분 납부 후 차량입고사실증명서 작성후 군, 구청, 동사무소에서 환경개선부담금(수시분 포함) 총괄현황표 발급 | | | |
| 통장 사본(필수) | 파일첨부 | 선택된 파일 없음 | 파일 추가 |
| 기타 서류(선택) (개명으로 말소증상 소유자 명과 통장사본 명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첨부 등) | 파일첨부 | 선택된 파일 없음 | 파일 추가 |

이전 단계

다음 단계

법인 명의 선택 구비서류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민원서비스 >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 구비서류 등록 (법인 차량)

| | | | |
|--|------|-----------|-------|
| 말소증(필수) | 파일첨부 | 선택된 파일 없음 | 파일 추가 |
| 환경개선부담금 총괄현황표 (필수) | 파일첨부 | 선택된 파일 없음 | 파일 추가 |
| - 발급방법 - 대상주최: https://www.wetax.go.kr/main.do 납부 → 납부대상확인 → 환경개선부담금 - 납부방법: 인터넷(은행, 지로, 뱅크스 등), 금융기관(현금입출금기, 창구 등) - 폐차장에 차량입고 차량입고사실증명서 발급 - 폐차장에 차량입고 차량입고사실증명서 발급 - 현재까지 무과분 납부 후 차량입고사실증명서 작성후 군, 구청, 동사무소에서 환경개선부담금(수시분 포함) 총괄현황표 발급 | | | |
| 법인인감증명서(필수) | 파일첨부 | 선택된 파일 없음 | 파일 추가 |
| 통장 사본(필수) | 파일첨부 | 선택된 파일 없음 | 파일 추가 |
| 기타 서류(선택) | 파일첨부 | 선택된 파일 없음 | 파일 추가 |

이전 단계

다음 단계

[참고2]

온라인 성능검사 신청방법

□ 준비사항 : 시스템에 접속하여 촬영 방법 등 매뉴얼을 숙지하고 **핸드폰으로 차량 동영상(1분 이내)을 촬영하여 준비(☎ 1577-7121)**

※ 차량 동영상 전·후·좌·우·차대번호(또는 후면 번호판)·전진·후진 등 1분 이내 촬영


※ 온라인 검사비용 14,000원은 폐차 후 보조금 지급시 전액 환급

유튜브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 신청 절차" 검색 → **동영상**으로 쉽게 절차 확인 가능

※ 링크 : <https://youtu.be/zKskqWmQYOU>



| 구 분 | 시스템 화면 | 사용 절차(방법) |
|--------------------------|---|---|
| 이용 절차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시스템 로그인 <small>차 주</small></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자료 (동영상) 업로드 <small>차 주</small></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신청 정보 확인 및 가상계좌 안내 <small>협 회</small></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검사 수수료 입금 <small>차 주</small></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합격 여부 판정 <small>협 회</small></div> </div> | |
| 1 단계 (차주) 온라인 로그인 | | <p>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바로가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차량번호, 신청자 성함, 휴대폰번호 입력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 신청서 작성 정보 ②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 전송된 인증번호 입력 → 로그인 <p>※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이후 로그인 가능</p> |

| 구 분 | 시스템 화면 | 사용 절차(방법) | | | | | | |
|---------------------------------|---|--|------|-------------------|----|--------|-------|---------|
| <p>2 단계 (차주)</p> <p>온라인 로그인</p> |  | <p>① “신청 및 결과확인” 클릭</p> | | | | | | |
| <p>3 단계 (차주)</p> <p>정보 확인</p> |  | <p>① 신청 내역 확인 → 동영상 등록</p> <p>② 차량 소유자 및 차량 정보 확인</p> <p>◎ 차량 정보</p> <table border="1" data-bbox="890 1173 1401 1415"> <tr><td>차대번호</td></tr> <tr><td>KPACA4AB1BP000000</td></tr> <tr><td>차명</td></tr> <tr><td>액티언스포츠</td></tr> <tr><td>차량 번호</td></tr> <tr><td>AA가1234</td></tr> </table> | 차대번호 | KPACA4AB1BP000000 | 차명 | 액티언스포츠 | 차량 번호 | AA가1234 |
| 차대번호 | | | | | | | | |
| KPACA4AB1BP000000 | | | | | | | | |
| 차명 | | | | | | | | |
| 액티언스포츠 | | | | | | | | |
| 차량 번호 | | | | | | | | |
| AA가1234 | | | | | | | | |
| <p>4 단계 (차주)</p> <p>동영상 업로드</p> |  | <p>① 업로드 → 내파일 → 동영상 선택 → 최종 제출</p> <p>※ 제출 이후 진행상태→동영상 등록 완료</p> <div data-bbox="874 1639 1423 1930"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p>www.escar.or.kr 내용:</p> <p>AA가1234차량 동영상에 최종 제출되었습니다. 대상차량확인 결과는 관리자 검토 후 안내 예정입니다.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결과 통보 예정)</p> <p>▶ 결과는 수수료 납부완료 차량에 한하여 확인 가능합니다.</p> <p>▶ 수수료 납부는 나이스페이먼츠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확인</p> </div> <p>※ 보조금 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동영상 업로드 필수</p> <p>※ 조기폐차 최근 신청일 이후 촬영 된 동영상 이어야 함</p> | | | | | | |

| 구 분 | 시스템 화면 | 사용 절차(방법) |
|--|--|---|
| <p>5 단계 (협회) 합격 여부 판정</p> | <p><검사 합격 시> 결제 문자 발송(1661-0808)</p> <p>[Web발신] AA가1234 고객님, 안녕하세요? (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에서 결제하실 내역 안내드립니다. 아래 URL로 접속하시면 상세 내역 확인과 결제진행이 가능합니다.</p> <p>* 귀하에서 신청하신 조기폐차 차량의 대상차량확인 수수료 납부(가상계좌) 안내 입니다.</p> <p>* 대상차량확인 결과는 수수료 납부 후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p> <p>▶아래 URL로 접속하시면 가상계좌 확인과 결제진행이 가능합니다.</p> <p>▶URL은 문자 수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 바랍니다.</p> <p>https://web.nicepay.co.kr/smart/slo.jsp?rid=WhIX2412197149</p> <p>가맹점 상호: (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상품명: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수수료 금액: 13,000원 가맹점 대표전화: 031-689-3073</p> | <p>① 협회 담당자가 업로드된 동영상 검토 ② 합격 여부 안내 ※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결과 통보</p> <p>1. 합격 : 대상차량확인 수수료(14,000원) 결제 요청 문자 발송 - URL은 문자 수신일로부터 7일간 유효</p> <p>2. 불합격 : 카카오톡으로 불합격 사유 안내 - 사유 확인 후 동영상 재등록 필요</p> <p><검사 불합격 시></p>  |
| <p>6 단계 (차주) 수수료 결제</p> |  | <p>① 안내 문자 메시지 링크 접속 → 결제하기 → 전체 약관 동의 → 거래 은행 선택 →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선택 → 가상계좌 발급</p> <p>②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수수료 입금(14,000원) ※ 안내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결제 진행되어야 함</p>  |

| | | |
|------------|---------------|------------------|
| 구 분 | 시스템 화면 | 사용 절차(방법)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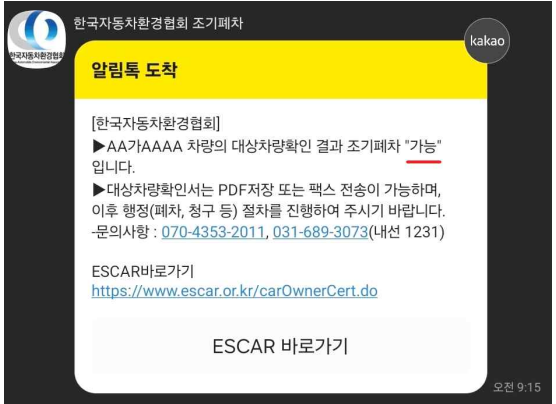
7
단계
(차주)
검사표
확인

PDF 저장
팩스 발송

| | | | | |
|---|--|---------------------------------------|------------------------------|---|
| 확인번호 경기도 41-50000 |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 | <input type="checkbox"/> 온라인 <input type="checkbox"/> 현장 |
| 성명 | 한국자동차경협회 | 생년월일 | | |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사인대로 217 | | | |
| 휴대전화(사무 본인) | FAX | 031-428-5474 | | |
| 차량번호 | AA가1234 | 차대번호 | IDNA7E55536E00000 | |
| <input type="checkbox"/> 연식(2011)년 | <input type="checkbox"/> 배기량(1995)CC | <input type="checkbox"/> 차량제(전설기계형) : | | |
| <input type="checkbox"/> 자동차 <input type="checkbox"/> 전설기계 | 정립(승합) : 5명 | 연료(엔진) : | | |
| 동행(좌승) : <input type="checkbox"/> 객석(승차) 0명 | | 승차(승차) : 271명 | | |
| 동일성 확인 | - 부착된 등록번호와 등록증상 일치 | <input type="checkbox"/> 일치 | <input type="checkbox"/> 불일치 | |
| 권동기 | - 원동기(자동차) 작동 여부 | <input type="checkbox"/> 가동 | <input type="checkbox"/> 불가 | |
| 동력전달장치 (변속기 포함) | - 변속기의 작동 여부 - 변속 시 충격 전달 여부(전 후진) | <input type="checkbox"/> 가동 | <input type="checkbox"/> 불가 | |
| 조향 | - 정상 작동 여부 | <input type="checkbox"/> 가동 | <input type="checkbox"/> 불가 | |
| 제동 | - 제동 가능 여부 | <input type="checkbox"/> 가동 | <input type="checkbox"/> 불가 | |
| 확인 항목 | - 유압유의 상태, 유압유 누출 여부 | <input type="checkbox"/> 양호 | <input type="checkbox"/> 불량 | |
| | - 각 작동부의 작동상태 | <input type="checkbox"/> 양호 | <input type="checkbox"/> 불량 | |
| | - 각 작동부의 이상소음 여부 | <input type="checkbox"/> 양호 | <input type="checkbox"/> 불량 | |
| 그외 주요 부품 | - 차체 외관 상태 | <input type="checkbox"/> 양호 | <input type="checkbox"/> 불량 | |
| | - 관중장치 상태(차량) | <input type="checkbox"/> 양호 | <input type="checkbox"/> 불량 | |
| | - 유리창 파손 상태 | <input type="checkbox"/> 양호 | <input type="checkbox"/> 불량 | |
| | - 타이어 장착 여부 및 상태 | <input type="checkbox"/> 양호 | <input type="checkbox"/> 불량 | |
| - 통화장치 설치 상태 | <input type="checkbox"/> 양호 | <input type="checkbox"/> 불량 | <input type="checkbox"/> 미설치 | |
| 첨부물 | <input type="checkbox"/>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escar.or.kr) 사용자 시스템에 등록된 동영상이도 있음 | | | |
| 간접 결과 | 정상 가동 여부 | <input type="checkbox"/> 가 | <input type="checkbox"/> 부 | |
| | | 불가 사유 | 종합의견 | |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검사비 기준 대상차량당 원비 14,000원(보증금 10,000원)을 기입하여 제출된 검사결과확인서(기입)를 본
 검사표에 기재하여도 14,000원 보증금 기입 사유로 해당 확인서 작성은 보증금 기입과 별개로 합니다. (보증금
 기입 사유로 유납사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기입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 현장 확인은 한국자동차경협회
 일산 지사로 연락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01월 20일
 한국자동차경협회장



- ① 대상차량확인 결과 안내 카카오톡 수신 후, 시스템 로그인(1~3단계 진행)
- ②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서 → 정상 가동 여부 “가” 확인

※ 수수료 입금이 완료된 차량에 한해 대상차량확인 결과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PDF저장·팩스 발송 가능

[참고4]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업체 현황

- 전국 관허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업체 이용 가능
- 차량상태확인(성능검사) 판정비용(업체별 상이)은 소유자 부담

['26.2월 기준]

| 연번 | 업 체 명 |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대형화물차 가능여부 | 비고 |
|----|-----------------|--------------------------|---------------|---------------|------------|
| 1 | (주)한국지엠동대구정비서비스 | 동구 안심로55길 56 | 963-6800 | | 동구 (19) |
| 2 | The car service | 동구 안심로59길 29 | 964-2077 | | |
| 3 | 자동차시대 종합정비 | 동구 공항로31길 9-7 | 983-7778 | ○ | |
| 4 | (주)재왕자동차정비공업사 | 동구 안심로 277 | 984-9401 | | |
| 5 | 대평정비 | 동구 안심로59길 17 | 962-7692 | | |
| 6 | (사)전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 | 동구 안심로 100 | 961-0743 | | |
| 7 | 동대구현대서비스 | 동구 안심로55길 10 | 963-5000 | | |
| 8 | (사)전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 | 동구 안심로73길 21 | 010-3510-3470 | ○ | |
| 9 |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 동구 안심로 500 | 813-0530 | | |
| 10 | (사)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 동구 안심로 327 | 964-0777 | | |
| 11 | (사)전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 | 동구 안심로59길 36 | 010-6655-3855 | | |
| 12 | (사)한국자동차공정정보협회 | 동구 동춘로 109 | 984-9664 | | |
| 13 | (사)한국자동차공정정보협회 | 동구 반야월로 277 | 010-3447-0369 | | |
| 14 |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 동구 반야월로 252 | 963-6800 | | |
| 15 |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 동구 반야월로 299 | 262-6329 | | |
| 16 | (사)전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 | 동구 안심로59길 22 | 02-998-0788 | | |
| 17 | (사)한국자동차공정정보협회 | 동구 반야월로 257, 105호 | 010-3225-8885 | | |
| 18 | 미래1급정비 | 동구 경안로106길 23 | 656-0101 | | |
| 19 | (사)한국자동차공정정보협회 | 동구 안심로65길 32 | 070-5100-5322 | ○ | |
| 20 | 에이엠씨 | 서구 북비산로17길 14-21(이현동) | 355-7668 | | 서구 (3) |
| 21 | (주)퍼스트엠 | 서구 문화로 37(이현동), 엠월드 지하2층 | 573-9697 | | |
| 22 | 월드자동차서비스 | 서구 문화로 46(이현동) | 552-4545 | ○ | |
| 23 | 수성종합서비스기아오토큐(주) | 수성구 신천동로 25(상동) | 768-0119 | ○ | 수성구 (4) |
| 24 | (주)성심두산검사소 | 수성구 지범로 39(두산동) | 716-7766 | | |
| 25 | (주)수성정비서비스 |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68길 13(옥수동) | 793-8572 | | |
| 26 | (주)지산자동차검사정비 | 수성구 청호로 91(지산동) | 784-5566 | | |

| 연번 | 업 체 명 |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대형화물차 가능여부 | 비고 |
|----|----------------|-----------------------------------|---------------|---------------|-------------|
| 27 | 성능상태점검장3공단점 | 북구 오봉로 155(노원동3가, 3공단매매단지) | 354-7416 | | 북구 (5) |
| 28 | (사)전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 | 북구 팔거천동로 388(동호동, 칠곡모터월드) | 324-2550 | ○ | |
| 29 | 창일모터스 | 북구 노원동로 29(노원동3가) | 358-0080 | ○ | |
| 30 | (사)전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 | 북구 노원로 115. 113호(노원동3가,대구오토월드) | 341-7668 | | |
| 31 | 도남자동차검사정비(주) | 북구 구리로 193(국우동) | 568-1122 | | |
| 32 | 성서자동차검사정비 | 달서구 성서공단로54길 8(월암동) | 582-4577 | ○ | 달서구 (13) |
| 33 | (주)크로바모터스 | 달서구 문화회관9길 52(장동) | 585-4700 | ○ | |
| 34 | (사)한국자동차공정정보협회 | 달서구 문화회관10길 72 | 010-3447-0369 | ○ | |
| 35 | 남대구터미널종합검사정비 | 달서구 성서공단로 346(월성동) | 585-6900 | ○ | |
| 36 | 뉴대원모터스 | 달서구 장기로65길 2(장기동) | 592-2819 | | |
| 37 | 차사랑정비 | 달서구 문화회관7길 17(장동) | 588-5115 | ○ | |
| 38 | 뉴글로벌모터스 | 달서구 문화회관5길 54(장기동) | 588-0007 | ○ | |
| 39 | 호림자동차검사정비 |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9(호림동) | 593-0025 | ○ | |
| 40 | 한일1급정비 | 달서구 성서로67길 54(갈산동) | 585-7744 | ○ | |
| 41 | 남대구서비스 | 달서구 성서공단로61길 12(장동) | 584-8585 | ○ | |
| 42 | (사)한국자동차공정정보협회 | 달서구 문화회관8길 12(장동) | 010-3825-0030 | | |
| 43 | 엔카대구월암 | 월암동 1107-4 | 02-3462-0510 | | |
| 44 | 엠체크 | 성서공단로 357, 1층 105호 | 294-9913 | | |
| 45 | 대교1급자동차정비 | 달성군 하빈면 달구벌대로2길 22-5 | 583-6363 | ○ | 달성군 (7) |
| 46 | 창림종합정비공장 | 달성군 논공읍 비슬로 1847 | 615-4747 | ○ | |
| 47 | 강동종합정비공장 | 달성군 하빈면 달구벌대로2길 22-14 | 582-6267 | ○ | |
| 48 | 국일1급정비 | 달성군 논공읍 노이길 40 | 611-5007 | ○ | |
| 49 | 회원삼보정비검사소 | 달성군 회원읍 사문진로5길 55 | 638-0202 | ○ | |
| 50 | 대구달성현대상용서비스(주) | 달성군 논공읍 비슬로 262길 21 | 617-7200 | ○ | |
| 51 | 제일자동차 | 달성군 현풍읍 현풍서로124 | 1688-5808 | ○ | |
| 52 | 군위1급종합정비공장 | 군위군 군위읍 경북대로 3605 | 054-383-4567 | ○ | 군위군 (1) |

[참고5]

폐차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 현황

※ 전국 관허 폐차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 이용 가능

['26.2월 기준]

| 구 분 | 업체명 | 소재지 | 연락처 | FAX |
|-----|-----------------|------------------------|--------------|--------------|
| 동 구 | (주)삼성자동차해체재활용 | 동구 화랑로 100길 127(용계동) | 053-964-4560 | 053-964-4123 |
| 서 구 | 광역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 서구 가르뱅이로 10길 20(이현동) | 053-352-0050 | 053-352-0052 |
| | (주)현대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 서구 국채보상로 16(중리동) | 053-551-5777 | 053-551-5772 |
| 달서구 | 대한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 달서구 문화회관5길 16(장기동) | 053-592-5050 | 053-591-1227 |
| | 삼양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 달서구 성서동로 222(장동) | 053-592-7733 | 053-592-7732 |
| 달성군 | 달성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주) | 달성군 하빈면 달구벌대로8길 132-20 | 053-582-4114 | 053-584-4554 |
| | 일성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 달성군 유가읍 용금공단길 9-4 | 053-611-5758 | 053-615-2290 |
| | (주)태역자동차해체재활용 | 달성군 하빈면 하빈남로 556 | 053-558-6699 | 053-568-5599 |
| | (주)한국종합자동차해체재활용 | 달성군 하빈면 하산길 68-32 | 053-566-8888 | 053-584-4844 |
| 군위군 | 영남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 군위군 군위읍 경북대로 3367 | 054-383-8272 | 054-382-5060 |
| | 케이비코리아 | 군위군 효령면 점말길 6-1 | 054-383-9666 | 054-383-9667 |

※ 전국 자세한 폐차장 현황은 관할 구·군청 교통부서에 문의

[참고6]

대기 관리 권역

(「대기 관리 권역법 시행령」 별표1)

| 권역 | 지역 구분 | 지역 범위 |
|-----|---------|---|
| 수도권 | 서울특별시 | 전 지역 |
| | 인천광역시 |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전 지역 |
| | 경기도 |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
| 중부권 | 대전광역시 | 전 지역 |
| | 세종특별자치시 | 전 지역 |
| | 충청북도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
| | 충청남도 |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 | 전북특별자치도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
| 남부권 | 광주광역시 | 전 지역 |
| | 전라남도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
| 동남권 | 부산광역시 | 전 지역 |
| | 대구광역시 | 군위군을 제외한 전 지역 |
| | 울산광역시 | 전 지역 |
| | 경상북도 |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
| | 경상남도 |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참고기]

자주 묻는 질문(QnA)

가. 사업 신청·선정 관련

Q1) 작년에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했는데, 금년에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 작년('25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하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금년('26년)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진행코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고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함.
- 다만, 작년 사업에 선정된 대상자가 금년까지 청구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을 진행 중일 경우에는 작년 사업으로 진행가능 함.

Q2)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시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직전 정기검사 중 관능검사 부분만 합격하였으면 신청 가능 함.
-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자동차 정기검사 기한과 관련이 없으며, 사업과 별개로 기한 내 정기검사 미수검 시 관할 구·군청 교통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Q3) 차량 사용본거지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가 상이한 경우,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어떤 지자체로 해야 하는지?

-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 사용본거지에 해당하는 지자체에 신청하여야 함.

Q4)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배출허용기준은 제작 일자나 연식으로 확인하는지?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의 배출허용기준은 제작일자나 연식으로 구분되지 않고, 해당 제작사(영업점 등)에 차주가 증빙서류를 받아서 사업신청 시 제출 해야 함
- ※ ※ 유료3 등급 : 배출가스 5등급 / 유료4 등급 : 배출가스 4등급

Q5) 법인(대표자A)명의 → A(개인)명으로 이전된 경우, 6개월 소유기간 인정 가능한지?

-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하여도 개인과 법인은 다르므로 개인으로 이전된 날짜로부터 6개월 이상 소유해야 신청 가능 함.

Q6) 차량 소유자 사망 시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 사업 신청 전 사망 시 : 법원에 상속승인을 받은 뒤 명의변경 후 신청
- 사업 신청 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망 시 : 법원에서 발급한 상속승인서를 청구서와 함께 추가로 제출할 경우 보조금 지급 가능

Q7) 사업 신청·선정 전에 신차(또는 중고차)를 미리 구매·등록하였는데 괜찮은지?

- 사업 신청 또는 선정 전에 미리 구매·등록('25. 11. 1. 이후)한 지원조건에 해당되는 신차 또는 중고차도 2차 보조금 지원대상에 적용 가능하나, 신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대상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함.
- 다만, 사업 선정 후 차량상태확인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구매와 동시에 폐차를 하면 안됨. 즉, 폐차할 차량과 새로 구매한 차량 모두 소유하고 있어야 함.

Q8) 공동명의 차량인데 소유자 중 한사람만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 사업 선정시 우선순위에 해당되는지? 추가 지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소유자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어야 100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모두 제출하여야 함.
- ※ 소상공인의 경우 공동명의 중 한사람만 해당되어도 추가 지원 가능

나. 차량상태확인(성능검사) 및 폐차, 말소등록 관련

Q1) 차량상태확인(성능검사)는 대구시 업체만 이용 가능한지?

- 전국 관허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업체에서 이용 가능함. 다만, [붙임4] 차량상태확인서(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의 확인항목과 첨부물 모두 발급 가능한 업체를 이용해야 함.

Q2) 폐차장은 대구시 업체만 이용 가능한지?

- 전국 관허 폐차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서 이용 가능함.

Q3)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사업선정 및 폐차 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 압류나 저당 유무에 관계없이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사업 대상자로 선정은 가능하나,
- 폐차 후 말소등록 시 "자진말소"를 하여야 보조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그 외 말소등록(차량초과말소, 수출말소 등)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함.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진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 함.
- ※ 압류, 저당내역은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 가능하며, 세부내역(건별 금액 등)은 해당 압류를 한 기관에 문의 필요
-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차량등록사업소, 정부24(인터넷)

Q4) 주변에 성능·상태점검업체가 없는데 차량상태확인(성능검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사업 대상자 선정 후 폐차 자진말소 등록전에 반드시 차량상태확인(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인근에 성능점검업체가 없는 경우, 온라인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음.

Q5) 성능검사를 온라인검사로 진행한 경우만 검사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지?

- 온라인검사든 현장검사든 대당 14,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음.(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단, 현장검사를 무료로 진행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으며, 현장검사의 경우 보조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등)를 제출하여야 지원가능 함.

Q6) 성능검사 비용(14,000원)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상한액과 관계없이 차량상태확인(성능검사)를 진행한 후 관련 영수증을 기본보조금 청구 시 붙임서류로 제출할 경우 비용 지원이 가능함.(※ 조기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지급)
- ※ 대상차량확인 시스템(www.escar.or.kr)외의 방법으로 확인받을 경우 차주에게 지원하는 비용 14,000원/대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직접 부담해야합니다.

다.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관련

Q1)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을 왜 미리 납부해야하는지?

-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을 폐차하여도 폐차장 입고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각 관할 구·군청에서 부과할 예정임.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개선하고자 조기폐차 지원사업 보조금 지침에 수시분을 미리 납부한 자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토록 명시하였음.

Q2)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은 어떻게 미리 납부하는지?

- 관할 구·군청 환경부서에서 부과하고 납부받고 있으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차량은 폐차하였고 수시분을 미리 납부하고 싶다고 고지서 또는 가상계좌번호를 요청 후 납부완료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음.

<납부문의처>

- * (중구청) 환경과 ☎ 053-661-2738 (동구청) 환경과 ☎ 053-662-2585
- * (서구청) 생활환경과 ☎ 053-663-2587 (남구청) 녹색환경과 ☎ 053-664-2583
- * (북구청) 환경관리과 ☎ 053-665-2572 (수성구청) 녹색환경과 ☎ 053-666-2644
- * (달서구청) 기후환경과 ☎ 053-667-2571 (달성군청) 환경과 ☎ 053-668-2584
- * (군위군청) 환경과 ☎ 054-380-7945 ※ 전화번호 변경 시 ☎053-120로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자 확인

라. 보조금(폐차 및 차량구매) 청구 관련

Q1) 청구서는 팩스나 이메일로 보낼 수 없는지? 꼭 원본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는지?

- [청구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은 원본이 필수이며, [차량상태확인서, 말소사실증명서, 통장, 소상공인 확인서 등]은 사본도 가능함. 따라서 등기우편을 이용하여야 하며 사본이 가능한 서류만 추가로 제출 시 이메일 이용 가능.
- ※ 사본이 가능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 시 문자, 팩스이용 가능여부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문의 (☎1577-7121)하고, 추가 제출 서류 도착여부를 꼭 확인할 것.

Q2) 사업 대상자(차량 소유자) 명의 통장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보조금을 다른 사람이 대신 받을 수 있는지?

-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자에게만 지급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동일주소 확인 필요)를 제출하여 지급 가능

Q3) 공동명의 소유자 중 1명이 연락이 되지 않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임장 없이 공동명의 소유자 중 1명에게 전액 지급할 경우, 다른 1명이 추후 보조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있음에 따라, 관련 서류없이 보조금 지급은 불가능 함.

Q4) 소상공인 관련 추가 보조금 지급 내용은?

- 조기폐차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추가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모든 자동차·건설기계 동일 적용)
- ※ (추가 지원금 대수 제한) 소상공인: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9대/년, 그 외 업종 4대/년